

보도시점 2023. 12. 20.(수) 배포즉시 배포 2023. 12. 20.(수)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국회 통과

-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해외인재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제정안이 12.20.(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첨단산업은 기술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기존 국내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이에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금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설치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평가하고,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해숙 (044-203-4227)





## 붙임

### 첨단인재특별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 1. 추진 경과

- □ (산중위) 3명의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 의결('23.11.30)
  - \* 양금희 의원('23.5), 김성원 의원('23.9), 홍정민 의원('23.9)
- □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3.12.19)
- □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3.12.20)

#### 2. 주요 내용

1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사내 + 산업계 + 대학협력 → 다각적 기반마련

#### 【사내 교육】기업内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 강화

- 사내대학(원): ① 학사 → 석·박사까지 허용, ② 재직자, 협력社 종사자 → 숙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까지 확대
-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의 부설 교육기관을 지정·지원
  - \* '8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지원하면서 기업의 R&D 투자, 역량강화 계기

#### 【산업별 교육】업종별 특화교육, 기술별 전문교육 등을 집중 지원

- o 업종특화 : 산업계 공동으로 첨단산업별 '아카데미' 설립·지원
- 기술전문 : 산업계 공통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활성화 촉진
- **인재혁신 전문기업** : 다양한 **민간 인력양성 모델** 양성·지원

#### 【대학교육에 참여】수요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 지원

- 교원, 장비 등 인적·물자 자원을 산업계가 개방·공유시 지원확대
- o 첨단산업 인력양성 과정의 기획·유영과정에 산업계 의견 또는 자 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 ② 해외인재 유치 기초수요조사 + 입국·체류특례 + 정주여건 종합지원 □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적정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이민절차 완화 등 시책 추진 근거 □ 정부의 해외인재 유치 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③ 정부지원 확대 사각지대(여성·청년, 지역·중소기업)에 다각적 지원강화 □ **여성·청년** : 첨단산업 고용실태 조사. 여성·청년인력 우선지원 지역 기업: 기업·정부·지자체·대학 공동지원으로 인력공급 촉진 중소·중견기업: 해외인재 유치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인재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우수 기업·인재 포상, 금융 등 지원 ☑ 인재혁신 기반조성 인재정보관리 + 위기업종 지원 + 생태계 구축 □ 첨단분야 **인력수급 차질**을 조기 인지하기 위한 **정보분석 강화** o 인재혁신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 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부) 연계 등 정보기반 고도화 □ 인력부족 예상시 **위기업종 지정** 및 **긴급지원** 근거 마련 o 인력부족으로 **산업활동 및 경쟁력 저하** 우려시, 산업계 신청 또는 장관 직권으로 부처 협의 및 첨단위 심의를 거쳐 위기업종 지정 ○ 긴급지원 : <sup>△</sup>대학(원) 정원확대, <sup>△</sup>해외인재 정주 지원, <sup>△</sup>인재양 성사업 우선추진 등 범정부 지원 □ 산업내 인력부족에 공동대응 위한 상생형 인력생태계 조성 지원 ○ 첨단산업 인력 전반에 대한 **후생복지**, 처**우개선**, **상생형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인협회' 설립